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8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0.

발 의 자:위성곤·홍문표·이개호

이상직 • 윤영덕 • 강민정

유준병 • 주철현 • 허 영

박재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회원조합과 그 구성원인 농업인조합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그러나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일부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구성원인 회 원조합장의 대표자 선출권이 제한되고 있으며, 중앙회장의 대표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대표자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또한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

하고자 함. 아울러 조합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조합,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 함으로써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의2, 제122조, 제124조 등)

법률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제1항 중 "「주식회사의"를 "「주식회사 등의"로, "제3조에" 를 "제2조제7호에"로 한다.

제12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 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.

제124조제1항 단서 중 "제54조제1항을"을 "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"로 한다.

제125조의5제2항제1호 중 "4명"을 "3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3명"을 "4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"를 "인사추천위원회의"로, "운영에 필요한"을 "결과 등에 관한"으로, "정관으로 정한다"를 "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인사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사추천위원회는 각임원정수의 1.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의 모집·조사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외부전문가는 조합,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제1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임명한다"를 "임명하되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"로 한다.

다만, 조합,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 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)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의2(외부감사인에 의한 회	제65조의2(외부감사인에 의한 회
계 감사) ① 조합장의 임기 개	계 감사) ①
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	
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	
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	
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	
계연도에 대하여 <u>「주식회사의</u>	<u></u> 「주식회사
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	<u>등의</u>
<u>에</u> 따른 감사인(이하 이 조에	제2조제7호에
서 "감사인"이라 한다)의 회계	
감사를 받아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22조(총회) ① ~ ④ (생 략)	제122조(총회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	⑤
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	
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	
행사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제130</u> 조제1항
	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

제124조(대의원회) ① 중앙회에 전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문다. 다만, <u>제54조제1항을</u> 준 용하는 제161조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⑥ (생 략)

- 제125조의5(인사추천위원회) ① 7 (생 략)
 -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1.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 장 4명
 - 2.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(공무원은 제외한다)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<u>3명</u>
 - ③ (생 략)
 - ④ <u>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</u> 구 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

거기 10 1 11 111 기관한 한
행사한다.
제124조(대의원회) ①
제130조제1항에 따른
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
54조제1항을
<u>.</u>
·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25조의5(인사추천위원회) ①
(현행과 같음)
②
1
3명
2
4명
<u>4.6</u> ③ (현행과 같음)
④ 인사추천위원회의
<u>결과 등에 관한정관으</u>

히이 겨으에느 1파이 이겨귀으

관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u><신</u> 설>

제129조(감사위원회) ① (생 략)

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 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 며,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.

- ⑤ 인사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 자를 공개모집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사추천 위원회는 각 임원정수의 1.5배 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 며 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 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 다.
- ⑥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29조(감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
----. <u>다만</u>, 외부전문가는 조 합,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3 ~ 6	(생 략))	
제144조(위원	l의 선임] 등) ①) 조합
감사위원회	기의 위육	원장은 역	인사추
천위원회어	ll서 추	천된 /	사람을
이사회의	의결을	거쳐 취	총회에
서 선출한	다. <u><단</u>	서 신설?	<u>></u>

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(提請)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<u>임명한다</u>.

③・④ (생 략)

	(3) ~ (6) (연행과 같음)
제	144조(위원의 선임 등) ①
	<u>다만, 조합, 중앙회</u>
	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
	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
	한다.
	②
	임명하되
	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
	<u>없다</u> .
	③・④ (현행과 같음)